

환경과 지방화 시대, 그리고 국가경쟁력

서재호, 최은석 /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3년, 4년
본협회와 다우케미칼이 공동주최한 논문 경시대회 당선작

환경문제가 글로벌 시대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면서 환경은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같은 문제의 대응을 모색해 본 다음의 논문을 지난호에 이어 소개한다.

V. 글로벌 시대의 우리의 전략

우리는 이제 環境問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지구화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이 글은 정부의 역할, 지방화 시대에 따른 環境行政의 과제, 그리고 기업의 對應方向으로 나누어 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環境政策, 產業政策 및 貿易政策의 相互調知

국가발전의 모델을 產業化와 성장모델을 지향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環境問題를 중요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고 이에대한 준비로 가장 기본시 되어야 할 것이 정부의 정책적인 變化와 생각되어진다. 정부의 環境政策은 악으로의 글로벌 시대를 위한 준비로 變化되어야 하며 産業政策과 貿易政策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産業政策에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후레온가스의 수급안정 및 대체물질개발을 추진, 에너지 절약형 수송체계 개선을 위해 장기계획을 수립, 국제적인 천연자원 개발 억제 동향에 대비한 목재 및 수산자원의 장기, 안정적 확보의 정책이 있는데 이를 조기시행해야 하며, 각종 國際環境協約 가입과 후속 이행계획의 수립, 국제협상에 대비하여 관계부처 협동으로 이루어 지고 환경고려적인 貿易政策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화 속에 정부의 産業政策 및 貿易政策도 선진국과 같은 환경기준하에 競争 할 수 있다.

環境政策의 變化는 기업에게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저렴한 환경투자의 여건조성과 보조금 지급 및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摸索할 수 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 최종 합의서에서도 환경관련 產業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積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정부의 環境政策은 대외적인 각종 國際協約과 환경보호의 움직임에 대한 貿易政策과 대내적인 産業構造의 再調停에 관련된 産業政策과의 조화를考慮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産業政策 및 貿易政策은 環境政策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세 정책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2. 地方化 時代에 따른 環境政策의 과제와 방향

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環境保全에 긍정적 변수내지는 부정적 변수로 작용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 자체가 環境問題의 해결책이 아니라, 이를 정치지도자, 행정관료, 기업가, 지역주민 등이 어떻게 環境保全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고 내재화 하는데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통해 환경우선주의를 확산시키되 개발지향주의를 억제시킬 수 있는 조건 내지 방향은 무엇일까?

環境行政기능의 과도한 中央集權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종속적으로 집행만을 책임지는 형태를 초래하여 다양한 환경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중앙중심적 환경체계는 지방 중심적 環境行政體系로 轉換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결해야 할 책임이 더욱 커진다. 環境問題는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本質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주민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지역주민을 단순히 행정의 수혜자일뿐만 아니라 입법과 행정의 책임자를 직접 선택하는 유권자로 인식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활동영역으로서 環境行政은 적지 않은 비준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環境行政의 개혁과제 및 방향, 그리고 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하자.

첫째, 일차적으로 환경영향권내의 광역環境問題를 둘러싼 자치단체간의 葛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環境保全共同對策機構를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도 相互調停이 불가능할 경우를 위해서 중앙의 환경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 가능 및 자치단체간 葛藤을 調停하는 權限과 位相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地域環境에 대한 오염유발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메카니즘'을 제도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 단체별 급증된 개발사업에 대비한 環境影響評價를 제도적으로 強化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環境規制基準은 국가차원의 틀 안에 그대로 두고, 각 지방별로 그 지방고유의 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단체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내에 환경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여 개발에 따른 영향을 심도있게 조사,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강력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지지가 필요하며, 이때 지방의회는 環境保全形 지역 개발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積極的인 자세를 견지, 고수 해야 될 것이다.

다섯째, 地方自治制 실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기능을 強化하기 위해 각종환경시설의 설치허가권, 단속권, 처분권 등 현지성과 집행적 성격이 강한 사

무는 점차 權限의 이양과 위임을 통해 자치사무화하도록 한다. 내용면에서 環境管理行政(環境規制제도 형성, 환경기준설정, 상시측정 등)과 自然環境保全行政 및 有害產業廢棄物 規制業務는 국가사무로, 일반폐기물 규제기능은 자치사무로 둔다. 그리고, 環境污染規制機能 측면에서 현재처럼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소관사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가 環境保全에 대한 국가시책의 종속적 집행자가 아니라, 積極的이고 獨自의인 環境政策의 時策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가능한 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地方分權化 추진과정에서 지도환경관리의 기술, 정보, 재정, 조례제정 및 지방행정체계의 조직, 인력, 제원 등의 확보를 전제로 기존 중앙중심적 環境政策을 점진적인 절차에 따라 分權化하여야 한다. 덧붙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중앙정부와의 통일성을 強°하며, 협력체제로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環境保全政策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잡고서 환경기본조례 또는 綜合環境保全條例와 같이 包括的인 환경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될 경우, 광역협력을 통해서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댐건설, 상수원보호구역설정, 하수처리, 환경오염관리, 폐기물처리, 협오물질처리시설 설치 등 광역행정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상호협력과 분쟁해결의 절차, 국가의 積極的 중재, 조정권 및 필요시 代執行權의 발동, 불이익을 당한 지역에 대한 보상방법, 조정위원회 및 상설실무기구설치의 필요, 재원조달방법 등은 보완하고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환경영향권별 광역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관리기능의 本質의 속성인 광역성과 주민접근성을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의해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環境政策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정부간 분업은 정책의 형성과 계획기능은 중앙정부가, 이에 대한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3.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綠色經營의 必要性 세계화에서 기술개발 또는 관리제도측면에서 세계화

〈표3〉 우리나라 기업별 대응전략

기 업	구 성 조 직 및 이 님	현 황
현대	환경제일주의 전사환경관리위원회	CFCs-LPG대체 세트 세제, 조미료, 화장품 용기의 재생 및 무공해 운동
삼성	환경관리실	무공해 자동차, CFCs의 신냉매제 개발
대우	지구환경연구소	국際環境問題의 통합과 ISO 14000의 대책 수립중 95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
한화	그룹별 환경위원회	환경產業 및 G7과제, 공동폐기물 사업처리
선경	환경 관리 운동 ECO 2000	ISO14000 대책반 운영 환경시설 투자증가
코오롱	안전 환경 전담실 그린 라운드 대책반 구성	첨유화학 에너지의 대체에너지 개발 무공해 에너지 개발
	환경 협의회	纖維產業의 공장폐수 처리, 環境產業 진출, 친화적 경영전략

자료: 환경운동 연합, 재벌기업의 녹색貿易障壁 對熊戰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업문화의 세계화이다. 기업이 갖고있는 고유정신의 세계화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것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기업경영전략의 비전이며 최후의 經營革命이라고 할 수 있다. 綠色經營의 혁명이 그것이며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이미 많은 기업이 시장, 인간, 환경 등 세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綠色經營戰略를 마련하고 있다.

〈표3〉의 제시된 기업에서 무역 및 생산과정에서의 환경비용을 內部化하려는 노력이 일고 있으며, 환경 가치를 인식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발을 꾀하려는 綠色經營的概念이 각 기업 내에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인류기업의 환경영향수준에는 이르지 못 하며, 또한 상당히 많은 기업과 중소기업은 환경투자를 투자의 概念이 아닌 비용의 概念이라는 데 문제 가 지적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對應方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영자의 環境問題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으로 인한 환경영향경영체제의 도입, 실시로 녹색생산, 녹색마케팅 등 녹색전략체제를 구축하는 기업활동의 그린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관련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積極的 투자가 과감이 이루어져 유망한 환경관련산업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強化하고,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環境問題에 대한 能動的이며 創

造的인 대응책으로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Global)시대의 외국회사들과 競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 공정 자체를 환경친화적인 공정으로 轉換시켜가야 할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법적 준수 사항의 이행의무 이외의 과도한 재정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보완장치의 必要性을 인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담들도 기업관계자들이 스스로의 생산 활동이 환경을 생각하는 운영方式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이 環境問題에 대한 인식을 危險回避나 規制만을 피하는 정도가 아닌 환경을 통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보다 장기적으로 積極的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그림1〉에서 環境問題에 대한 기교의 대응책으로써 기업들은 環境規制의 變化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동기를 積極的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미래의 環境污染規制 동향을 예측, 能動的으로 對應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國際協約에 대한 사전적 對應을 競爭의 우위를 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미래의 環境問題에 대한 對應은 오염문제에 대한 예측, 대체제품의 개발, 환경적 합성 제품의 개발 등과 같은 創造的의 對應이 된다. 또한, 환경과 기업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목표에서부터 생산까지 모든 분야와 단계에 環境要因을 충분히 인식, 반영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의 環境規制基準을 국제적 기준에 접근시

키려고 調停해야 한다. 환경논리를 악세운 貿易障壁을 감안할 때 환경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상품적 가치를 상실하여 수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까지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악으로의 창설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IEO)나 國際標準化機構(ISO)의 통합에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國際標準化機構내에 설치된 일곱개의 환경 관련기술 위원회 중 TC 207(환경영역)를 환경감사 및 조사, 환경마크제, 환경성능평가, 라이프사이클 분석,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제품의 規格° 와 基準° 를 시도하고 있다.

VI. 要約 및 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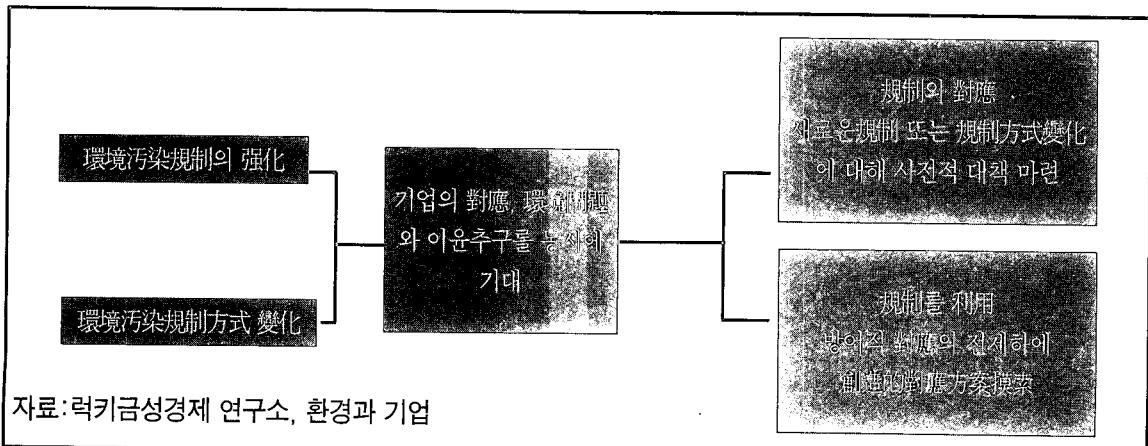
유엔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地球環境問題는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으로 浮刻되어지면서 각국은 자국의 환경 기준은 물론 世界化 시대에 걸맞는 지구환경보호기준을 마련하고자 積極的이고 치열한 外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受動的인 입장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環境汚染問題를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해 受動的인 입장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국내에서는 각종 環境汚染問題를 낳고 있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Global) 시대를 대비해 우리는 環境問題를 단순히 민생차원의 생활여건개선으로만 다루어서는 안되어 환경의 國際性을 인식해야 한다. 환경이 곧 國家競爭力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민, 기업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환경과 무역규제가 관련된 協約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첫째, 정부는 貿易政策 및 產業政策을 環境政策과 效率的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環境政策을 貿易 및 產業政策과 병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調停, 運營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環境保全을 우선시하여 기업경영을 위축시키고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결국 環境政策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產業政策과 貿易政策을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는 그 지방 고유의 생태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녹색의식을 유도하여 자발적으로 環境保全에 참여케 하는 環境政策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악으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중앙정부의 관료주의적인 지시체계에서 벗어나 地方環境行政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強° 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積極的, 能動的, 環境行政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環境保全을 위한 그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쾌적한 환경 욕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유도로,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주민의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따라서 環境行政 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행정의 民主性과 반응성이 갖춰지고, 주민 참여로 인한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環境政策의 正當性이 확보되어 環境保全의 실효성 증대가 클 것이다. 地方自治制 및 국가 환경 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주체가 되는 녹색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환경에 대

〈그림1〉 環境汚染規制에 대한 기업의 對應戰略



参考文献

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고 環境汚染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국가의 環境競爭力を 높이는 데 국민 개개인이 밑에서부터 동참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국민 각자가 녹색마인드를 갖고 환경개선활동에 积極的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업은 綠色經營이 중시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경영의식을 환경친화적 경영의식으로 轉換 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현재 세계화된 기업을 꿈꾸며, 인간존중 및 고객우선의 영이념을 내세운 기업에 있어 꼭 필요한 경영이념인 것이다. 또한 기업의 존재자체가 지역사회는 물론 地域環境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環境保全努力은 기업활동에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우선 대내적으로 環境問題를 담당하는 조직의 설치, 인원의 보강, 환경담당부서의 지위격상, 환경기준준수에 대한 내부감사제도의 도입 등과 같은 환경과 관련한 사내조직 체계를 정비, 보강해야 한다.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環境規制強化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의 전사원이 能動的으로 참여하고 效率的의 대응방안을 講究해야 한다.

國際環境規制의 強化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 운동기를 积極的으로 활용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미래의 環境汚染規制동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에 能動的으로 대응해야 한다. 까운 장래에 규제가 이루어질 環境汚染問題에 경기기업들 보다 먼저 대응함으로써 競争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環境問題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은 문제의 명확한 인식에 있으므로 각 기업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能動的으로 대응하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摸索하는 등 創造的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綠色行政, 기업의 綠色經營, 그리고 국민의 綠色保全이 삼위일체가 되어 녹색마인드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글로벌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임에 분명하다.

- 김병완 “한국의 環境政策과 녹색운동”, 「나남」, 1994.
- 김병완 “한국지방자치와 環境問題”, 「환경과 생명」, 1994. 여름호
- 김현철 “국제환경경영표준 ISO 18000”, 환경운동, 1994. 2, p120~121
- 노용희 “지방자치와 環境行政”, 김동훈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발간 위원회, “지방자치시대의 정치와 행정”, 한림원, 1993.
- 대한상공회의소 “국내의 환경동향과 産業政策방향”, 1992.
- 대한상공회의소 “環境保全과 기업경영전략”, 1992.
- 대한상공회의소 “環境政策과 공해방지비용의 부담”, 1991.
- 럭키금성경제연구소 “환경과 기업”, 정문 출판, 1992.
- 박태순 “기후이상현상에 대비한 기후변화협약”, 환경운동, 1994. 2, p106
- 와다다케시 “지구환경론”, 예경 출판사, 1992.
- 이득연 “지방자치와 환경운동의 展望”, 「지방자치」, 1993. 7.
- 이상돈 “환경보호와 貿易規制”, 환경법연구 제15권, 1993.
- 이원태 “地球環境協約에 대한 입장과 對應”, 현안분석 제5호, 1992. 7.
- 이종범 “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6.
- 이창기 “지방정부의 환경정책 : 그 실태와 展望”, 「지방자치」, 1993. 10.
- 임기철, 김재영 “地球環境問題가 경제와 産業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정책, 기획 본부, 1992. 3.
- 임기철, 김재영 “環境問題의 국내의 현황과 기술정책적 對應”, 과학기술정책, 기획 본부, 1992. 7
- 장호철 “오존층 보호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환경운동, 1994. 2, p110~111
- 전국경제인연합 “環境問題와 企業”, 산업환경위원회, 1992. 2.
- 정문종 “환경과 貿易規制”, 현안분석 제74호, 1994.
- 정수복 “한국에서의 녹색정치의 가능성”, 「환경과 생명」, 1994. 봄호.
- 정수산 “우리나라 環境保全政策의 문제점”, 현안분석 제14호, 1990.
- 정희성 “地方化時代 환경부문의 과제와 정책 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 최무웅 “돌풍 그린 라운드”, 정훈출판사, 1994.
- 최창호 “分權化 시대의 자치행정의 발전 방향”, 김동훈교수 회갑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地方自治制의 정치와 생명”, 한림원, 199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도권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연구”, 한림원, 1990.
- 환경부 “환경백서”, 1993.
- Olson, Marcia,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 Public Goods and the Theory of Good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Ostrom, Vincent, ‘The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 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73.
- Rifkin, Teremn and Rifkin, Carol G., “Voting Gree”, Doubleday, 1992.